

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 2021. 7. 1. 규정 제847호

1. 개정이유

-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제9조(교육과정 운영)에 따라 단과대학 강사임용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단과대학 강사임용심사위원회 운영(안 제8조)
- 단과대학 소속 강사 운영 등(안 제11조, 제13조, 제16조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합 의
- 라. 불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**학과**”를 “**단과대학, 학과**”로 하고, “**학과**”를 “**단과대학**”으로 한다.

같은조제2항 중 “**학과장**”을 “**학장, 학과장**”으로 하고, “**학과장**”을 “**학장**”으로 한다.

같은조제3항 중 “**학과장**”을 “**학장**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**학과**”를 “**단과대학**”으로 한다.

같은조제2항 중 “**학과**”를 “**단과대학, 학과**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과 같은조제5항 중 “**학과장**”을 “**학장**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**학과**”를 “**단과대학**”으로 한다.

부 칙(제847호, 2021. 7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강사임용심사위원회) ① 각 <u>학과</u>, 대학원, 교양교직과정부(이하 “각 <u>학과</u> 등” 이라 한다)에 강사의 신규채용, 재임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강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장인 해당 <u>학과장</u>, 대학원장, 교양교직과정부장(이하 “해당 <u>학과장</u> 등” 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채용분야 전공자나 관련 계열 전문가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제척·기피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 위원은 매 학기별로 해당 <u>학과장</u> 등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④ ~ ⑦ (생 략)</p>	<p>제8조(강사임용심사위원회) ① -- <u>단과대학, 학과, 단과대학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학장, 학과장,</u> -----</p> <p>----- <u>학장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----- <u>학장</u> --</p> <p>-----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소속) ① 강사의 소속은 계약된 강의를 개설한 각 <u>학과</u> 등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여러 <u>학과</u> 등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에는 주당 시수가 많은 곳에 소속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학과</u>별 주당 시수가 동일할 경우 채용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소속된 <u>학과</u>로 한다.</p>	<p>제11조(소속) ① -----</p> <p>----- <u>단과대학</u> -----</p> <p>----- <u>단과대학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 <u>단과대학, 학과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단과대학, 학과</u>-----</p>
<p>제13조(근무조건 및 복무 등) ①~② (생 략)</p> <p>③ 강사는 본교에 임용된 이후 본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거나 겸임하는 경우에는 소속 <u>학과장</u>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>⑤ 강사는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소속 <u>학과장</u>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(생 략)</p>	<p>제13조(근무조건 및 복무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학장</u>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 <u>학장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면직) ①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소속 <u>학과</u> 등이 폐지되는 경우</p> <p>3.~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6조(면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 <u>단과대학</u> 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	<p>부 칙(제847호, 2021. 7. 1.)</p> <p>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